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3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백혜련
민병덕 · 김남희 · 박홍배
이훈기 · 박정현 · 김남근
황운하 · 정진욱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하더라도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및 제89조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을 제81조의4로 하고,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학교의 청렴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렴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에 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 중 “2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1조의3(학교의 청렴교육 진흥)</u>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

	<u>립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립교육에 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생략)</u>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81조의4(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u>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 ----- ----- ---<u>5년</u>-----<u>5천만원</u>-----.